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85
----------	-------

발의연월일 : 2021. 7. 12.

발 의 자 : 송재호 · 김민기 · 김민철
한준호 · 이형석 · 윤준병
노웅래 · 김영배 · 이광재
이성만 · 이수잔^바 · 김한정
우원식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테슬라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는 가상자산의 시장가격에 연동해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규제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현황 및 소유목적 등을 공시 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 확정 후에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동의를결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신청인은 동의를결 확정 당시의 시장 상황이 변경되어 동의를결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도 동의의결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사업자는 동의의결 신청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시정방안 협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 간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져 동의의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조사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동의의결의 개시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통지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동의의결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도 동의의결의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해당 회사 및 다른 국내 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126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의 유형과 소비자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동의를결 절차의 개시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여 동의를결 이행관리의 정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후단 신설).

다. 동의를결 취소 요건에 해당 행위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나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적법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고, 사업자에게도 동의를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의를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가상자산소유 현황 등의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때에는 그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0조 또는 제87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된 경우

제9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기준은 시정방안의 유형과 소비자 피해구제에 미치는 유익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9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가 적법하게 된 경우

④ 신청인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동의를결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0조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소유 현황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소유 현황 등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⑩ (생략)

제91조(동의를결의 취소) ① 공정
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를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신설>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다.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91조(동의를결의 취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불공정거래 관
련 법률의 제정·개정이나 판
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가 적법하게 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신청인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동의를결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는 제90조제4항에 따른 심의·
의결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
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6조(벌칙) -----

-----.

<p>1. ~ 3. (생략) <u><신설></u></p> <p>4.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 4. <u>제30조의2를 위반하여 가상 자산소유 현황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	---